

都市가스事業法中改正法律案

제안이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도심지내 고압가스배관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시공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여 가스시설의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도심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가스(압력단위 1MPa:10kg/cm²)배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의2).
- 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특정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에게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탁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가스시설 안전관리자의 선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29조제1항).
- 다. 가스시설의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3조제1항).

법률 제6886호 (2003. 5. 27 공포)

都市가스事業法中改正法律案

都市가스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에 대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 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전단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제2항, 제53조제4호 · 제5호 및 제54조제1항제13호에서 같다)”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
사용하는 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사업자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3.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공자

제4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

제51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지단을 받지 아니한 자

제54조제1항제14호중 “都市ガス事業者·特定ガス使用施設의 사용者”를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시공자”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공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시공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체결하는 공사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第2條(定義) _____
1. ~ 7. (생략) (신설)	1. ~ 7. (현행과 같음) 8.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신설)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p>第29條(安全管理者) ① 都市ガス事業者 및 特定ガス使用施設의 使用者は 가스供給施設 또는 特定ガス使用施設의 安全維持 및 運用에 관한 職務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事業開始 또는 사용전에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规定에 의하여 選任된 安全管理者는 이 法에 의하여 選任된 安全管理者로 본다.</p> <p>② ~ ⑦ (생략)</p> <p>第43條(保険加入) ① 都市ガス事業者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特定ガス使用施設의 가스使用者는 그가 供給 또는 사용하는 가스의 事故로 인한 他人의 生命 · 身體나 財產上의 損害를 補償하기 위하여 保険에 加入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第44條(手數料등) ① (생략)</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 (신설)</p> <p>4. ~ 6. (생략)</p> <p>第51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1. ~ 3. (생략) (신설)</p> <p>4. ~ 9. (생략)</p> <p>第54條(過怠料)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p> <p>1. ~ 13. (생략)</p> <p>14. 第43條第1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规定에 위반하여 保険에 加入하지 아니한 都市ガス事業者 · 特定ガス使用施設의 使用者 또는 都市ガス事業者 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p> <p>② ~ ⑦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第29條(安全管理者) ① _____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30조제2항, 제53조제4호 · 제5호 및 제54조제1항제13호에서 같다)</p> <p>-----</p> <p>-----</p> <p>-----</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第43條(保険加入)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 · 사용하는 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生命 ·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1. 도시가스사업자</p> <p>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p> <p>3.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공자</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第44條(手數料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3의2.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p> <p>4. ~ 6. (현행과 같음)</p> <p>第51條(罰則) _____</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3의2.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p> <p>4. ~ 9. (현행과 같음)</p> <p>제54조(過怠料) ① _____</p> <p>-----</p> <p>1. ~ 13. (현행과 같음)</p> <p>14. _____</p> <p>-----</p> <p>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 시공자</p> <p>② ~ ⑦ (현행과 같음)</p>